대전광역시 중구

구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공 보

http://www.djjunggu.go.kr

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제1214호

2021. 5. 13.(목)

차 례

훈 령

○ 대전광역시 중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····· 2

안 내 문

▣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
◎ 중구공보 발행일 : 매주 금요일(전자공보) ◎ 공보문건 접수마감 : 매주 목요일

※ **금요일이 휴일일 경우는 목요일에 발행**되며 **접수 마감일 이후는 다음호에 게재**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특별한 문건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문건은 게재할 수 없으니 각 실·과·소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고시공고에 등재 후 시행문은 전자결재로 기획공보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공보는 전자공보로 구 홈페이지(민원·행정-행정자료실)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

발행 : 대전광역시 중구 / 편집 : 공보담당(우34939)대전시 중구 중앙로 100 ☎ 606-6164, Fax 606-7910

대전광역시 중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2021년 5월 13일

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박 용 갑

대전광역시 중구 훈령 제 532 호

대전광역시 중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대전광역시 중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이 규정은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”을 “이 규정은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”로, “제24조와「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」”를 “제24조와 「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」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없는”을 “없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안업무에 대하여”를 “보안업무를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간사1인”을 “간사 1명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 중 “공개 공간정보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”를 “공개 공간정보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제1호 중 “정 :”을 “정: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부 :”를 “부: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시건장치”를 “잠금장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“의 사전 허가”를 “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“본청 :”을 “본청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보건소 :”를 “보건소: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동주민센터 :”를 “동행정복지센터:”로 한다.

제13조제4호 중 “월1회”를 “월 1회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별지 제4호서식”을 “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사전”을 “미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 중 “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 제25조”를 “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 제25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“때”를 각각 “경우”로, 같은 호 중 “출력한”을 “출력할”로, 같은 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때”를 각각 “경우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1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구청장” 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3항제1호 중 “사전에”를 “미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,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비인가카메라・휴대폰・휴대용저장매체”를 “비인가카메라・휴대전화・휴대용저장매체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전에”를 “미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 제4조에 의한”을 “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른”으로,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,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”를 “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강구하기 위하여 연1회”를 “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정기 점검”을 “정기점검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때에는 이를 지체없이”를 “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26조제4호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6호서식]

반납(폐기)확인서

본인은 “ 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공개제한(비공개) 공간정보자료 활용을 완료함에 따라, 당초 제출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에 따라 공개제한(비공개) 공간정보자료를 반납(폐기) 완료하였기에 반납(폐기)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1. 본인은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반납(폐기)하였으며,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.

※반납(폐기)내역: 이동식디스크(USB) 및 보안메일, 컴퓨터파일에 저장된 모든 파일 등

2. 본인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귀 기관의 자료제공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.

확인일자: 년 월 일

반납(폐기)자:
소 속:
직 급:
성 명: (서명)

확인자:
소 속:
직 급:
성 명: (서명)

대전광역시 중구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귀하

반 납(폐 기) 확 인 현 장 점 검

○ 확인일자:

○ 확 인 자:

○ 확인장소:

○ 확인내역:

○ 확인결과: 반납(폐기)완료되었음[반납(폐기)확인서 징구]

반 납(폐 기) 사 진 대 지